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가 정기총회 외에 추가로 소집되기 어려운 현실정을 반영하여,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, ‘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것’으로 개정하고, 예산 및 결산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,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확정된”을 “편성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예산을 의결한 총회”를 “예산 편성을 의결한 이사회”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, 예산”을 “예산”으로 한다.

제20조 앞의 “제3장 수입 및 지출”을 삭제하고,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수입 및 지출

제25조 앞의 “제4장 보칙”을 삭제하고,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보칙

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·제3항, 제12조, 제13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결산 보고 서식에 관한 적용례)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제1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수익사업 성과 명세서

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

보훈 관련 단체명:

(단위: 원)

귀속 주체 (사업소별)	매출액	매출원가	사업이익	경상이익	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	당기 순이익
○○사업소						
○○사업소						
○○사업소						

작성방법

- 경상이익은 사업손익(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해 산출된 금액)에서 사업외손익(사업외수익에서 사업외비용을 차감해 산출된 금액)을 가감해 산출된 금액으로,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의 운영으로 인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.
-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회원복지 및 단체운영 등을 위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서 회원복지 및 단체운영 등을 위해 고유목적회계로 전출한 금액으로, 「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의 당기 수익사업수익금과 같습니다.

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

제 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

보훈 관련 단체명:

(단위: 원)

본부 등	항목	지출 항목 1	지출 항목 2	지출 항목 3
본부				
○○지부				
○○특별지회				
소계				
합계				

작성방법

- 이 서식은 「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·회계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의 “회원복지비 지출”란의 내용을 세분화 한 것입니다.
- “항목”란에는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을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적고, 각 항목 아래에는 본부 및 각 지부(특별지회)를 구분한 바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 이 경우 지출 항목의 수는 보훈 관련 단체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.
예시) 고령회원 위문품, 회원 대상 장학금 등
- “본부 등”란에는 보훈 관련 단체의 본부, 각 지부 및 특별지회를 예시와 같이 구분해 적습니다.
예시) 본부, 서울지부 등
- 회원복지비는 비용으로 인식 가능한 지출만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. 회원복지를 위한 자산 구입 등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란에 구분하여 적고,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.
- 회원복지비 지출 항목 산정기준
 - 전체 회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.
예시) 전체 회원에게 명절·기념일의 기념 선물 등을 주는 경우
 - 일부 회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.
예시)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회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해 고령회원·환자 등에게 위문품,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
 -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.
예시)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회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회원의 가족(유가족 포함)에게 위문품, 장학금 등을 주는 경우
 - 회원복지비로 볼 수 없는 경우
 - 본부에서 지부, 지회 및 특별지회(이하 “지부등”이라 합니다)에 지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단체운영비로 봅니다. 다만, 회원복지에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회원복지비로 인정됩니다.
 - 회원복지비 인정기준을 갖춘 경우라도 혜택을 받은 대상이 임원 또는 지부등의 장인 경우에는 단체운영비로 봅니다.
 - 다른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, 지원금 등은 단체운영비로 봅니다.
 - 임직원의 워크숍, 식비 등은 단체운영비로 봅니다.
- 보훈 관련 단체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사업소의 수익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본부로 전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부 또는 특별지회에서 직접 회원복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회계연도의 소속 구분) ① (생략)	제6조(회계연도의 소속 구분) (현 행 제1항과 같음)
제11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 ① <u>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,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</u>	제11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 ① <u>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이사회</u> <u>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, 총</u> <u>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</u>
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</u> <u>1항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</u> <u>쳐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</u> <u>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</u> <u>에게 보고해야 한다.</u>
제12조(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)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 조제1항에 따라 <u>확정된</u>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를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제3호 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 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	제12조(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) ----- ----- <u>편성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. 1. ~ 4. (생 략) 5. <u>예산을 의결한 총회의 회의</u> <u>록 사본</u> 제13조(준예산)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 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 지 않은 때에는 <u>국가보훈처장에</u> <u>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, 예산이</u> <u>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</u> <u>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</u> <u>행할 수 있다.</u>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제19조(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 리) (생 략) <u>제3장 수입 및 지출</u> 제20조(수입·지출의 집행기관) (생 략) <u><신 설></u> 제24조(감사) (생 략) <u>제4장 보칙</u> 제25조(규제의 재검토) (생 략)	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예산 편성을 의결한 이사회-</u> <u>-----</u> 제13조(준예산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제3장 수입 및 지출</u> 제19조(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 리)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제20조(수입·지출의 집행기관) (현행과 같음) <u>제4장 보칙</u> 제24조(감사)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제25조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
--	--